



# 축산물등급판정세부기준 개정

농림부고시 제2004-10호(2004.3.13)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축산법시행규칙 별표5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등급판정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축산물"이라 함은 소·돼지·닭의 도체 및 계란을 말한다.
2. "도체"라 함은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도살·처리된 소·돼지·닭을 말한다.
3. "벌크(Bulk)포장"이라 함은 가금 도축장에서 도살·처리된 닭을 중량에 따라 일정 수량으로 포장한 것을 말한다.
4. "롯(Lot)"라 함은 등급판정 신청자가 등급판정 신청을 위하여 낱도체 또는 계란의 품질수준, 중량규격, 종류 등의 공통된 특성에 따라 분류한 제품의 무더기를 말한다.
5. "파각판"이라 함은 난각에 금이 갔으나 내용물이 누출되지 않은 계란을 말한다.

제3조(등급판정 대상품목) 축산물등급판정은 소·돼지 및 닭의 도체와 계란을 대상으로 한다.

## 제2장 소도체 등급판정

제4조(소도체의 육량등급 판정기준) ① 소도체의 육량등급판정은 등지방두께, 배최장근단면적, 도체의 중량을 측정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육량지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A, B, C의 3개등급으로 구분한다.

(육량등급판정기준)

육량등급	육량지수
A	69.00 이상
B	66.00 이상 ~ 69.00 미만
C	66.00 미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도체의 육량등급판정을 위한

육량지수는 소를 도축한 후 2등분할된 왼쪽 반도체에 부도1과 같이 마지막등뼈(홍추)와 제1허리뼈(요추) 사이를 절개한 후 등심쪽의 절개면(이하 "등급판정부위"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항목을 측정하여 산정한다.

1. 등지방두께 : 등급판정부위에서 부도2와 같이 배최장근단면의 오른쪽면을 따라 북부쪽으로 3분의 2 들어간 지점의 등지방을 mm단위로 측정한다. 다만, 등지방두께가 1mm 이하인 경우에는 1mm로 한다.
2. 배최장근단면적 : 등급판정부위에서 부도3과 같이 가로, 세로가 1cm단위로 표시된 면적자를 이용하여 배최장근의 단면적을 cm<sup>2</sup>단위로 측정한다. 다만, 배최장근 주위의 배다열근, 두반근과 배반근은 제외한다.
3. 도체중량 : 도축장경영자가 측정하여 제출한 도체 한 마리 분의 중량을 kg단위로 적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육량지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육량지수 = 65.834 - [0.393 × 등지방두께(mm)]  
 + [0.088 × 배최장근단면적(cm<sup>2</sup>)]  
 - [0.008 × 도체중량(kg)]

[단, 육용품종(肉用品種)의 소도체는 2.01을 가산하여 육량기준 지수로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지수는 소숫점 셋째자리 이하를 절사하여 둘째자리까지 산정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된 소도체의 육량등급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육량등급을 낮추거나 높여 최종 판정한다.

1. 도체의 비육상태가 매우 나쁜 경우에는 산출된 등급에서 1개 등급을 낮춘다.
2. 도체의 비육상태가 매우 좋은 경우에는 산출된 등급에서 1개 등급을 높인다.

제5조(소도체의 육질등급 판정기준) ① 소도체의 육질등급판정은 등급판정부위에서 측정되는 근내지방도(Marbling), 육색, 지방색, 조직감, 성숙도에 따라 1', 1, 2, 3의 4개등급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육질등급판정을 위한 항목별 측정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근내지방도 : 등급판정부위에서 배최장근단면에 나타난 지방분포정도를 부도4의 기준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이 예비등급으로 판정한다.

〈육질등급 예비판정기준〉

근내지방도	예비등급
근내지방도 번호 6 또는 7에 해당되는 것	1*등급
근내지방도 번호 4 또는 5에 해당되는 것	1등급
근내지방도 번호 2 또는 3에 해당되는 것	2등급
근내지방도 번호 1에 해당되는 것	3등급

- 육 색 : 등급판정부위에서 배최장근단면의 고기 색깔을 부도5에 의한 육색기준과 비교하여 해당되는 기준의 번호로 판정한다.
- 지방색 : 등급판정부위에서 배최장근단면의 근내지방, 주위의 근간지방과 등지방의 색깔을 부도6에 의한 지방색기준과 비교하여 해당되는 기준의 번호로 판정한다.
- 조직감 : 등급판정부위에서 배최장근단면의 보수력과 탄력성을 별표1에 의한 조직감 구분기준에 의하여 해당되는 기준의 번호로 판정한다.
- 성숙도 : 왼쪽 반도체의 척추 가시돌기에서 연골의 균화정도 등을 별표2에 의한 성숙도 구분기준과 비교하여 해당되는 기준의 번호로 판정한다.

③ 소도체의 육질등급판정은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예비등급에 대하여 육색, 지방색, 조직감, 성숙도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3의 기준에 따라 최종 판정한다.

- 육 색 : 부도5의 육색기준 번호가 1 또는 7인 경우
- 지방색 : 부도6에 의한 지방색기준 번호가 7인 경우
- 조직감 : 별표1 조직감 구분기준 번호가 3인 경우
- 성숙도 : 별표2 성숙도 구분기준 번호가 8, 9인 경우

제6조(소도체의 등외판정) 소도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육량등급과 육질등급에 관계없이 등외로 판정한다.

- 별표2 성숙도 구분기준 번호8, 9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비육상태가 매우 불량한 노폐우 도체이거나, 성숙도 구분기준 번호 8, 9에 해당되지 않으나 비육상태가 불량하여 육질이 극히 떨어진다고 인정되는 도체
- 방혈이 불량하거나 외부가 오염되어 육질이 극히 떨어진다고 인정되는 도체
- 부분폐기 정도가 심하다고 인정되는 도체
- 도체중량이 150kg미만인 왜소한 도체로서 비육상태가 불량한 경우
- 재해, 화재, 정전 등으로 인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냉도체 등급판정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도체

제7조(소도체의 등급표시)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정된 육량등급과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정된 육질등급을 병행하여 별표4와 같이 표시하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외로 판정된 경우에는 "D"로 표시한다.

② 축산물가공처리법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검사 결과, 결합이 있는 도체에 대하여는 별표5의 규정에 따라 그 결합내역을 부도7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 제3장 돼지도체 등급판정

제8조(돼지도체의 등급판정방법) ① 돼지도체의 등급판정방법은 온도체 등급판정방법으로 한다. 다만, 신청인이 육질을 구분하기 위하여 온도체 등급판정방법으로 판정된 도체에 대해 별지 제1호 서식으로 냉도체 등급판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해 판정할 수 있다.

② 온도체 등급판정방법은 인력등급판정 또는 기계등급판정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기계등급판정을 실시하고 있는 작업장에서 기계의 고장 등으로 기계판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9조제1항의 인력등급판정기준을 적용하여 판정한다.

제9조(온도체의 등급판정기준 및 적용방법) ① 인력등급판정 기준은 별표7 및 별표8의 기준에 따라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판정한다.

- 인력등급판정기준의 적용은 별표7에 의해 1차 등급판정을 한 다음 별표8에 의해 2차 등급판정 한다.
- 최종 등급판정은 1차 등급판정 결과와 2차 등급판정 결과 중 가장 낮은 등급으로 한다. 다만, 수태시 도체의 경우는 A등급은 C등급으로, B등급 및 C등급은 D등급으로 낮추어 판정한다.

② 기계등급판정은 별표7 및 별표8의 기준에 따라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판정한다.

- 기계등급판정은 별표6의 시설 및 적용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 기계등급판정기준 적용은 제1항의 1호 및 2호와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1차 등급판정을 위한 항목별 측정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 도체의 중량은 제4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시한 중량에 의한다.
- 인력등급판정기준에 의한 등지방두께 측정은 왼쪽 반도체의 마지막 등뼈와 제1허리뼈 사이 및 제11등뼈와 제12등뼈 사이의 등지방을 mm단위로 측정한 평균치로 하되 소수점이하는 절사한다.
- 기계등급판정기준에 의한 등지방두께 및 등심직경은 초음파기계(Ultrafom, A-mode)를 사용하여 왼쪽 반도체의 제12등뼈와 제13등뼈 사이에서 북부방향



으로 5cm지점의 도체표면에 기계를 밀착시킨 상태에서 mm단위로 측정한다.

4. 기계등급판정기준에 의한 수율 측정은 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해 측정된 등지방두께와 등심직경을 다음의 산식에 적용하여 산출한다.

$$\text{수율산식} = 70.4521 - [0.5270 \times \text{등지방두께(mm)} + [0.0971 \times \text{등심직경(mm)}]$$

제10조(냉도체의 등급판정기준 및 적용방법) ① 냉도체 등급판정은 근내지방도(Marbling), 육색, 조직감, 수분삼출도, 근육분리도에 따라 "1", "1", "2", "3"의 4개등급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냉도체 등급판정을 위한 항목별 측정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근내지방도 : 배최장근 단면에 나타난 지방분포정도를 부도8의 기준에 의해 다음과 같이 예비등급으로 판정한다.

〈근내지방도 기준에 의한 예비등급〉

근내지방도	예비등급
근내지방도 번호 5에 해당되는 것	1등급
근내지방도 번호 3 또는 4에 해당되는 것	1등급
근내지방도 번호 1 또는 2에 해당되는 것	2등급

2. 육 색 : 배최장근 단면에 나타난 고기색깔을 부도9의 육색 기준에 의하여 판정한다.
3. 조직감 : 배최장근 단면에 나타난 고기의 탄력·결 및 광택을 별표9의 조직감 구분기준에 의하여 판정한다.
4. 수분삼출도 : 배최장근 단면에 나타난 수분삼출 정도를 별표10의 수분삼출도 구분기준에 의하여 판정한다.
5. 근육분리도 : 배최장근 주위의 근육(장능골근, 앞쪽등툽니근, 마름모근, 넓은툽니근, 등세모근, 낫갈래근 등)사이의 분리정도를 별표11의 근육분리도 구분기준에 의하여 판정한다.

③ 냉도체 등급판정기준에 의한 예비등급은 제2항제1호의 근내지방도 기준에 의한 등급으로 하되, 다음의 제1호에 해당되거나 또는 제2호 내지 제4호 중 2개 이상이 해당될 경우 근내지방도 기준에 의한 예비등급을 적용하지 않고 3등급으로 판정한다.

1. 육 색 : 부도9의 육색기준 번호가 1, 2 또는 6인 경우
2. 조직감 : 별표9에 의한 조직감 구분기준 번호가 3인 경우
3. 수분삼출도 : 별표10에 의한 수분삼출도 구분기준 번호가 3인 경우
4. 근육분리도 : 별표11에 의한 근육분리도 구분기준 번호가 3인 경우

④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외로 판정된 도체는 냉도체 등급판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수태지 도체의 경우 1등급은 2등급으로, 1등급 및 2등급은 3등급으로 낮추어 판정한다.

제11조(돼지도체의 등외판정)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등급을 적용하지 않고 등외로 판정한다.

1. 수태지 특유의 냄새가 심하게 나는 도체
2. 상처 또는 화농 등으로 도려내어 제거하는 정도가 심하다고 인정되는 도체
3. 도체중량이 40kg미만으로서 왜소한 도체
4. 새끼를 분만한 어미돼지(경산모돈) 또는 씨수돼지(종모돈)의 도체
5. 등지방 및 복부지방이 진한 황색이거나 연지방으로 품질이 매우 좋지 않은 도체
6. 비육상태가 아주 불량하며 등지방 및 복부지방 부착상태가 빈약한 도체
7. 고유의 특수목적을 위해 이분할을 하지 않아 등급판정 방법 적용이 어려운 학술연구용, 마비규 또는 계수용 도체
8. 검사관이 자가 소비용으로 인정한 도체

제12조(돼지도체의 등급표시) ① 온도체의 등급표시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등급판정 결과에 따라 "A, B, C, D"로 표시하고 제11조에 의한 등외판정의 경우는 "E"로 표시한다.

② 냉도체의 등급표시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등급판정 결과에 따라 "1, 1, 2, 3"으로 표시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의한 등급표시는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도체표면에 병기하여 구분 표시하여야 한다.

제13조(냉도체 등급판정확인서 발급)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냉도체 등급판정을 받은 도체에 대하여는 매수인 또는 등급판정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돼지 냉도체 등급판정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4장 닭도체 등급판정

제14조(닭도체의 등급판정) ① 닭도체의 등급판정은 품질등급과 증량규격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닭도체의 품질등급판정은 룯트의 크기에 따라 적정수의 표본을 무작위로 추출하는 표본 판정방법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등급판정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전수판정방법을 적용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등급판정 방법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전수판정방법 : 등급판정 신청된 닭도체를 한마리씩 개체별로 등급판정
2. 표본판정방법 : 등급판정 신청된 룯트의 크기에 따라 적정수의 표본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등급판정

④ 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표본판정방법에서 룯트의 벌크 포장수에 따른 표본의 크기는 별표12와 같다.

제15조(닭도체의 품질등급 판정기준) ① 닭도체의 품질등급

판정을 위한 항목별 품질기준은 별표13과 같으며, 품질등급 부여방법은 별표14와 같다.

② 닭도체 등급판정의 결과는 절단육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등급표시 및 그 절차는 도체의 경우와 같다.

③ 등급판정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등급판정을 실시한 결과, 해당 룻트가 신청인이 희망하는 품질등급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등급판정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등급판정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에게 통보한다.

제16조(닭도체의 중량규격 기준) ① 닭도체의 중량규격은 신청인이 제시한 닭도체의 중량에 따른 호수를 기준으로 별표15와 같이 구분한다.

② 등급판정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분에 따라 신청인이 제시한 닭도체의 중량규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별표12의 규정에 의하여 표본추출된 닭도체에 대하여 중량을 칭량(稱量)하여, 중량범위에서 2%이상 미달하는 닭도체의 수가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룻트에 대하여 중량규격의 재선별을 신청인에게 요구한다.

제17조(닭도체 등급의 재판정 신청) ① 신청인은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판정이 보류되거나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량규격 재분류가 요구된 닭도체에 대하여는 중량규격 및 품질평가기준에 적합하도록 다시 선별한 후 등급의 재판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등급판정사는 등급의 재판정이 신청된 룻트에 대해서는 별표12의 규정에 의한 표본의 크기 보다 더 많은 표본을 추출하여 등급판정 할 수 있다.

제18조(닭도체의 등급표시) ① 닭도체의 등급표시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등급과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중량규격을 속포장지와 겉포장지에 부도10과 같이 등급판정일자, 축산물등급판정소장 인영(또는, 축산물등급판정사 성명) 등과 함께 표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량규격 및 등급판정 일자는 신청인이 속포장지와 겉포장지에 별도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③ 등급판정사는 제1항 및 2항의 규정에 따라 등급판정을 실시한 결과 해당 룻트가 신청인이 희망하는 품질등급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등급판정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제21조(계란의 중량규격 기준) ① 계란의 중량규격은 계란의 무게에 따라 별표20과 같이 구분한다.

② 등급판정사는 신청인이 제시한 룻트의 중량규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별표16의 규정에 따라 외관·투광판정을 실시하는 계란에 대하여 중량을 칭량하여, 중량범위에서 2g이상 미달하는 계란의 수가 표본수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룻트에 대하여 중량규격의 재선별을 신청인에게 요구한다.

제22조(계란등급의 재판정 신청) ① 신청인은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판정이 보류되거나,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량규격 재분류가 요구된 계란의 룻트에 대하여는 중량규격 및 품질평가기준에 적합하도록 다시 선별한 후 등급의 재판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등급판정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의 재판정이 신청된 룻트에 대해서는 별표16의 규정에 의한 표본의 크기 보다 더 많은 표본을 추출하여 등급판정 할 수 있다.

제23조(계란의 등급표시) ① 계란의 등급표시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등급과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중량규격을 포장용기에 부도11과 같이 등급판정일자, 축산물등급 판정소장 인영(또는, 축산물등급판정사 성명) 등과 병행하여 표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량규격 및 등급판정일자는 신청인이 속포장지와 겉포장지에 별도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③ 신청인은 등급판정 받는 모든 계란의 난각에 식용색소로 부도12와 같이 등급판정 확인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 신청인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난각의 등급판정 확인표시 방법에서 집하장 시설여건을 고려하여 집하장 코드, 생산자번호, 계군번호의 표기를 생략할 수 있다.

## 제5장 계란 등급판정

## 부 칙

제19조(계란의 등급판정) ① 계란의 등급판정은 품질등급과 중량규격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란의 품질등급은 룻트의 크기에 따라 무작위로 표본을 추출하는 표본판정방법을 적용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룻트의 크기에 따른 표본 추출율(신청수량에 따른 표본의 수)은 별표16과 같다.

제20조(계란의 품질등급 판정기준) ① 계란의 품질등급판정을 위한 외관·투광 및 활란판정의 기준은 별표17과 같으며, 등급판정 신청된 룻트의 표본에 대한 등급판정 결과에 따라 별표18과 같이 신청 룻트 전체에 등급을 부여한다.

② 각 품질등급별 피각란 허용범위는 별표19와 같다.

(시행일) 이 고시는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생도체 등급판정기준 및 적용방법)의 개정 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동고시의 별표, 부도 및 서식 내용은  
우리소의 홈페이지(Kormeet.com) "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